



해외 출국자를 위한 “민방위 면제신청서” 안내



안녕하세요 검암경서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 이종진이라고 합니다.

지역민방위대원분들께서 해외체류하는 경우가 빈번해 집에 따라, 해외장기체류 시 민방위 처리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해외장기체류 시 아래절차를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.

<교육면제 및 유예>

◆관련근거: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, 같은법 시행령 제31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

◆면제대상

-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
-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(당해년도 교육훈련계획 종료시까지)
-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해의 예방, 응급대책,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자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자
- 의료, 전기, 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

◆면제신청 방법

스텝 I 민방위 교육훈련면제 및 유예신청서 출력



스텝 II 아래 면제신청서의 파란부분 작성 하세요!



스텝 III 작성한신청서를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!

- ※ 교육훈련 면제신청 시 직접방문 할 필요가 없으며, 관할 읍면동에 이메일, 팩스, 우편 등으로 신청 가능
- ※ 일시 귀국 시 국내 체류일이 14일이내인 경우 해외체류일에 합산 처리
- ※ 추가 문의사항은 검암경서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담당 ☎032)560-3008 로 문의해주세요!

